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

원고(재심원
고)

임그루



36322

2060615-079638 ↓

(민사2과 제22민사부)

2017-053-698-006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재나 698 기타(금전)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제22민사부

법원사무관 이강남

직통 전화 : 02-530-1236

팩 스 : 02-530-1298

e-mai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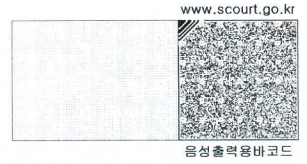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재나698 기타(금전)

원고(재심원고) 임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

피고(재심피고)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윤모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6재나905 판결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13. 선고 2009가합970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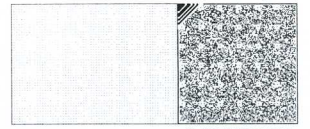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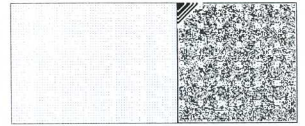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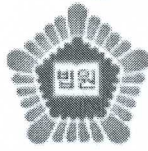
원고는 재심소장을 통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제1심의 소는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행정사건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을 한 이 법원이 이를 민사사건으로 취급하여 판결 또는 심판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2.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징계해고라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규약 제12조와 신분보장규정 별표 제1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임금 피해액으로서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이는 민사사건으로서 위 제1심에 대한 항소심판결 및 그 항소심에 대한 재심판결, 그리고 재심대상판결 등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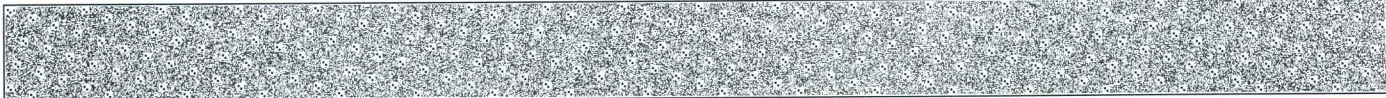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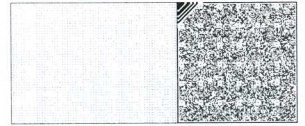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범균	<u>이범균</u> 
	판사	진현민	<u>진현민</u> 
	판사	김승주	<u>김승주</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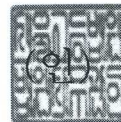


정본입니다.

2017. 11. 23.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강남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